

『하나의 정기예금』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『하나의 정기예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『거치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.

제3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이상 5년 이내 일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백만원 이상입니다.

제6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가입일(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 단,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가입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, 쿠폰의 우대금리를 본조 1항의 적용금리에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사용이 가능하며, 재예치 또는 중도 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제1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7조 이자계산

이 예금의 이자 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.

제8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

이 예금은 최초 약정예치기간보다 긴 예치 기간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9조 일부해지

-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, 일부 해지금액에 대하여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.

제10조 재예치

- ①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예치 방식은 원금 또는 (세후)원리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② 재예치시에는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만기일(단,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재예치하며, 재예치일의 하나원큐(스마트폰 banking) 상품 상세페이지에 안내한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③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
 -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
 - 압류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
 - 판매중단 등 (단,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한 계좌에 한함)

※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